

#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 대상 안내

## □ 적용 대상
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(지방대학 중퇴자 포함)

## □ 용어 정의

- 지역균형인재 :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
- 지방대학
  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)
 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   -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    - \* 분교 해당 여부는 학교 측에 반드시 확인 요망

예시
○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○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## □ 적용 예외
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, 대학원 이상은 지방대학에서 제외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는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음
- 채용형 인턴(고졸) 분야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 제외